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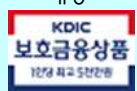
『KEB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KEB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KEB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 상품특징: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통장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2017.6.2 현재, 세전, 연)

구분	내용																
가입대상	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연금급여비 수급자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계정과목	저축예금																
입금제한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이 제한됨. (예금주 본인의 입금도 제한됨.)																
적용금리	저축예금 고시금리에 따름. (평균 5천만원 미만 0.1%, 평균 5천만원 이상 0.2%. '17.5.29 현재, 세전)																
우대금리	『e-플러스 통장』인 경우 연0.5% 우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수수료 우대서비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수수료구분</th> <th>『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거래 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td> <td>마감후 현금인출</td> <td rowspan="5">면제</td> </tr> <tr> <td>당행이체</td> </tr> <tr> <td>타행이체</td> </tr> <tr> <td>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td> <td>타행이체</td> </tr> <tr> <td colspan="2">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td> </tr> <tr> <td colspan="2">수표발행(정액/부정액)</td> </tr> </tbody> </table>			수수료구분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거래 시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당행이체	타행이체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표발행(정액/부정액)	
수수료구분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거래 시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당행이체																
	타행이체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표발행(정액/부정액)																	
거래제한	·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지한(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함)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 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세제혜택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계약해지	영업점 방문하여 해지 가능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